

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6. 7.(목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4인)
4. 불참위원 : 김충식 상임위원 (국외 출장 중)
5. 회의내용
 - ① 성원보고
 - ② 국민의례
 - ③ 개회선언
 -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⑥ 의결사항

가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경영권의 실질적지배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 경영권 지배 인가에 관한 건 - (주)현대HCN의 (주)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경영권 지배 - (2012-32-116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현대HCN이 제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이자 기간통신사업자인 (주)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및 인가 신청을 원안대로 승인 및 인가함
- (주)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및 인가 신청 내용

※ (주)현대HCN은 (주)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의 최대액출자자(100%)인 (주)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.46%를 취득

< (주)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변동 내역 >

변경 전		변경 후	
(주)CJ헬로비전	97.46%	(주)현대HCN	97.46%
(주)현대HCN경북방송	1.12%	(주)현대HCN경북방송	1.12%
기타(2인)	1.42%	기타(2인)	1.42%
합계	100.00%	합계	100.00%

나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- (주)영서방송 및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 - (2012-32-117~118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99조제1항에 의거,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(주)영서방송 및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원안대로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재허가 조건 위반 내용

- (주)영서방송과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은 2011년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각각 방송수신료의 1.99%(2억5천7백만원), 9.75%(13억1천7백만원)를 지급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

※ 재허가 조건 : 종합유선방송사는 연간 방송수신료의 25%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함

② 시정명령 내용

2011년도 방송수신료의 25%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2012년 9월 30일까지 이행하고, 그 결과를 2012년 10월 1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

다. (재)CBS기독교방송의 '김미화의 여러분 1부' 재심에 관한 건(2012-32-119)

-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'김미화의 여러분 1부'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('12.3.28)에 대한 (재)CBS기독교방송의 재심 청구('12.4.25) 건에 대하여, 원안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분대로 '주의'를 명하기로 의결함

< 원심 주요내용('12.3.28) >

▪프로그램	CBS-AM '김미화의 여러분 1부'(2012.1.5. (목), 14:05-15:00)
▪제재 조치	주의(객관성, 공정성 조항 위반)
▪위반내용	○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사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최근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, – 소 값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▲“광우병 파동이 날 때 미국산 소가 풀리면 그 다음해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, 다 예상됐던 거거든요.” (중략) ▲ 아예 축산을 하지 말라는게 지금 정부 방침인 것 같아요”, “그래야 마음대로 농업도 다 없애고, 개방하고 뭐 이럴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” 등과 같이 발언하는 내용 – 이자율 및 물가 정책 등과 관련하여 ▲“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자율을 낮게 묶어 두고 있거든요. 빚내서 집 사라는 거예요. 근데, 지금 빚내서 집사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거든요.”, ▲“아, 강부자 정권이니까요.(생략).. ▲“지금 그 정부 정책 방향은 다 물가를 올리는 방향이에요“ 등과 같이 발언하는 내용 등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단정적·반복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여 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」 제14조(객관성), 제9조(공정성)제1항을 위반함

7] 보고사항

가. 도시계획시설 중 '통신시설의 범위' 지정을 위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도시계획시설 중 통신시설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 및 관련고시 개정안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 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- 주요내용(지정방안)
 - 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통신설비의 범위 지정 고시 제정
 - 해저케이블 육양국, 국제전화 관문국, 위성통신지구국을 포함
 - ② 「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기준(고시)」 부칙 개정
 - 기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통신시설이라 해도 다른 사업자가 상호접속·설비제공·가입자선로공동활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이후 2년간 국사당 33㎡의 면적을 제공의무 부여

○ 향후 추진 일정

- 행정예고 : '12년 6월
-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: '12년 6월
- 위원회 의결 : '12년 7월

나. 「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'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시행령)'을 개정함에 따라, 후속 조치로 우리 위원회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을 라봉하 융합 정책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- ① (연구비 비목 단순화) 연구자의 행정 부담 경감, 연구비의 유연성 있는 활용 지원
 - 4개 항목(인건비, 직접비, 위탁연구개발비, 간접비) → 2개 항목(직접비, 간접비)
- ② (중견 기업 조항 신설) 대기업, 중소기업으로만 나누어 관리하던 매칭 기준, 기술료 등을 중견기업을 추가하여 관리 기준 마련
 - 매칭비율 : 일반기업(50%), 중소기업(25%) ⇒ 대기업(50%), 중견기업(40%), 중소기업(25%)
 - 기술료 : 일반기업(40%), 중소기업(20%) ⇒ 대기업(40%), 중견기업(30%), 중소기업(10%)
- ③ (R&D 책임성 강화) 과제중단, 연구비 부정 사용, 연구 윤리 위반 등에 제재 기준 및 연구비 환수 기준 구체화
 -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, 보고서 미제출 등 과제 관리 해태, 연구비 유용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위반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
- ④ 신규 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써, 신규 인력을 다수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30%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
- ⑤ 기 타
 - 선정 평가 결과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평가시에는, 평가위원을 기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

○ 향후 일정

-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: '12. 6월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- 입안예고,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| : '12. 6월 |
| - 위원회 의결 | : '12. 7월 |
| - 부속규정 및 수행관리 지침(훈령) 개정 | : 연구개발관리규정 고시이후 |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. 6. 14(목).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05)